18.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□ 발의일자 : 2020년 4월 9일

□ 발의의원 : 홍인표, 강성환, 김규학, 김동식, 김원규, 김재우, 김지만, 박갑상, 박우근, 배지숙 의원

□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□ 상정일자 :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0년 4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홍인표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전화, 방문예약 뿐 아니라 인터넷·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농업기계 임차 사전예약 방식을 다양화하고,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임대절차에서 농기계 임차에 대한 사전예약 방식 다양화(안 제6조)

○ 임대기준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도록 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개정 취지 및 적법성 여부

○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시대에 맞게 농기계 임차 사전 예약에 다변화된 방식을 적용해 임차인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고, 사회적 약자를 농기계 임대 우선순위에 둘 것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농업 발달을 장려하려는 것으로,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**안 제6조제1항**(임대절차)은 농기계 임차 시 사용 가능한 사전예약 수단을 규정하고,

별지 제1호서식(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)은 안 제7조1항에 신설된 농기계 임대 우선순위에 따라 성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란*을 추가한 것임.

* 생년월일과, 뒷자리 7개 숫자 중 맨 앞 번호까지 기재

○ **안 제7조제1호**(임대기준)은 농기계 임대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열거한 것으로, 동일한 농기계에 대해 2인 이상이 동시 신청하였을 경우에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것이며

안 제7조제2호(임대기준)는 농가 당 기종별 1대 임대 가능한 현행 조례와 달리, 1 농가 당 기종을 불문하고 1대만 임대하도록 규정하여 농기계 임대의 공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.

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농기계 임차 예약 수단을 다양화하고 임대 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각 종류별 농기계 대수가 적으므로 물량 확충이 필요한 듯함.	○ 예산 문제로 인하여 대구시 전체의 각 기종별 즉각적 물량 확충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, 추후 관련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○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해당 없음.